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

제정 2012.07.24.

개정 2015.02.23.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계약서 표준서식) 규정 제6조의 연구계약서 표준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말한다. 다음 각 호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본 운영지침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 연구결과물, 연구보고서 및 연구결과에 의한 지식재산권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할 수 없다. 다만, '고의로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라는 문구까지는 협상 여지가 있다.
2.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성과물에 대한 학술발표는 제한하지 않는다. 단, 지식재산권리화를 위해 '사전 통지 후 협의'를 거쳐 발표시점 연기 등은 협조할 수 있다.
3.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발명자가 속한 기관의 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연구비 지원기업과 공동소유할 수 있다. 공동소유 시 대학은 자가 실시를 하지 않으므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비용은 기업이 부담한다.
4. 기업과 공동소유한 지식재산권을 기업이 실시하는 경우 대학에게 실시료를 지급하고, 대학소유 지분을 기업이 매입하는 경우 매입 금액은 총 연구비의 100~500%를 기준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협상의 여지가 있다.
5. 기업과 공동소유한 지식재산권이 기업에서 정하는 표준화 단체의 표준지식재산으로 채택되는 경우 제4호의 지분 매입 금액의 1~3배의 금액을 대학에 추가로 지급한다.
6. 선행 지식재산권의 실시는 별도로 협상하되 정부지원 연구과제의 관리규정이거나 기타 연구과제 계약 등에 실시조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7. 종료된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실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상해야 한다.

제3조 (발명신고)

- ① 규정 제7조의 산학협력단 발명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발명신고서(권리승계합의서) 및 변리사지정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2. 발명제안서 및 선행기술조사서 [별지 제3호 서식] - 특허에 한함
-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에서 규정한 양식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 및 전산시스템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발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특허출원 대리인은 산학협력단이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 수입료는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표준요금(이하 "표준요금"이라 한다)이내에서 지원받고 초과금액은 발명자가 자비로 부담하겠다는 전제하에 변리사지정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발명자가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산하 법인조직에서 재직기간 중 창출한 모든 지식재산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간주한다. 단, 위원회에서 자유발명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 (발명심의절차)

- ① 산학협력단은 발명자로부터 접수한 제3조의 구비서류가 불비한 경우 발명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이 완료되지 않는 한 발명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② 특허 출원을 목적으로 하는 발명(이하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등급은 S, A, B, C로 구성되며 등급별 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S등급: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며 국내특허와 해외특허 출원이 필요
 2. A등급: 평가결과가 우수하며 국내특허 출원이 필요하고, 해외특허 출원에 대한 심의 필요
 3. B등급: 평가결과가 보통이며 국내특허 출원이 필요
 4. C등급: 평가결과가 불량이며 특허 출원을 하지 않음
- ③ (1차 심의) 접수된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심의서류에 기초해 국내출원비용 지원여부 및 해외출원 심의대상을 결정한다.
 1. 접수된 특허발명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선행기술검토보고서
 2. 발명자, 지정된 대리인 및 산학협력단 담당자가 참석한 면담을 통해 작성된 [별지 제4호 서식]에 준하는 1차 평가표
 3.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기관 또는 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된 특허평가서
 4.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류
- ④ (2차 심의) 전항의 해외출원 심의대상에 대해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시점에 특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5호 서식] 양식에 준하는 2차 평가표에 따라 해외출원 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특허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해당 교직원 등이 해외출원 심의에 필요한 추가 자료의 제공, 기술수요자 및 시장 전문가의 소개 및 특허심의위원회 발표 등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 해외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해당 발명과 관련 있는 기업 소속의 부장 또는 책임급 전문가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자
 2. 변리사 등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외부전문가
 3.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관련 전문가
- ⑤ 특허 외 지식재산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본조의 심의절차 없이 특허

심의회 위원회 간사들의 결정에 의해 지원할 수 있다.

⑥ 특허심의회 위원회 간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표발명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발명에 대해 심사청구하지 않는 국내출원(이하 "예비출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식재산권리화 비용 지원원칙)

① 대표발명자당 연간 특허발명 1건에 대한 지원(이하 "기본지원"이라 한다)이 원칙이며, 접수된 특허발명의 비용지원 여부 및 범위 등은 해당 특허발명의 기술성, 시장성, 특허성 등을 기준으로 특허심의회가 결정한다.

② 해외출원 비용지원이 결정된 특허발명은 PCT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PCT 출원과 관계없이 1개국에 한하여 개별국가에 대한 해외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1. 특허발명이 출원 전 공개된 경우
2. 개별 국가에 조속히 등록해야 할 경우
3. 기타 특허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PCT 출원에 따른 개별국가 해외출원도 1개국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특허심의회는 PCT 출원 진행 과정의 국제조사보고서 등에서 특허등록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부정적이거나 개별국가의 해외출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외출원을 포기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표발명자가 요청하는 경우 특허심의회는 대표발명자의 3년간 연구비수주 평균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산학협력실적 등을 감안하여 추가지원(이하 "추가지원"이라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단, 기본지원과 추가지원이 합산된 당해년도 누적치를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특허발명 건수는 최대 3건, 해외출원 국가수도 최대 3개국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표발명자가 요청하는 경우 특허심의회는 심의결정에 따라 기본지원과 추가지원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단, 발명자 중 1인 이상이 이미 특별지원을 받고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특허발명에 대한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⑥ 지식재산권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산학협력단의 표준요금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발명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비용이 표준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 해외출원에 있어 권리범위를 넓히기 위해 중간단계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⑦ 산학협력단은 제4조의 발명심의회절차에 따라 비용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에 대해, 산학협력단 명의로 하고 발명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출원 또는 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⑧ 타 기관과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의 비용지원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심의회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 삭제 <2015.2.23.>

제7조 (지식재산권리화에 소요되는 제 비용의 처리)

①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년간에 걸쳐서 집행됨을 감안하여,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지식재산권리화 비용, 위원회 운영비용, 평가비용,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비용 등은 차년도 이월, 단계별 지원 및 연중 수시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산학협력단 회계 내에 특별적립금 형태의 '지식재산권리회계 계정'을 별도로 설정하여 관리·운영한다.

②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년간에 걸쳐서 집행됨을 감안하여 개별 연구비에 계상된 지식재산권리화비용은 과제 종료 후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과제종료 후 5년을 초과한 후에는 제1항의 지식재산권리회계계정으로 편입하여 사용하되 외부기관의 시행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③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연구비에 계상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지식재산권리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하되 외부기관의 시행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8조 (지식재산권의 유지 및 포기)

① 산학협력단은 등록 후 5년간 특허 유지비용을 부담하고 6년차 이후의 연차료는 부담하지 않고 해당 특허를 포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등록 후 5년차 연차료를 지급한 특허에 대하여, 연차료 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특허의 대표발명자에게 포기 예정임을 통보한다. 대표발명자가 포기에 동의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해당 특허의 유지를 포기하며, 대표발명자가 유지비용을 부담하거나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특허를 유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유지비용을 부담한 특허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유지하거나 정부지원 연구과제 결과물에 한하여 연구책임자인 발명자에게 무상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④ 제3항에 따라 산학협력단 명의로 유지한 특허가 기술이전 되어 실시료가 발생하면 발명자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5.2.23.>

제9조 (해석 및 시행) 이 지침 외의 사항은 지식재산권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 ① 지식재산권리화 비용은 2012년도부터 이 지침을 적용하며 연구비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특허의 보상금은 이 지침 제정 공포된 날 이후 신규 출원 건부터 적용한다.
- ③ 이 지침 중에서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과 관련된 조문은 시행일 이후 해당 규정이 개정 공포되면 개정된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연구 계약서

연구과제명	
계약당사자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하 "甲"이라 한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 (이하 "乙"이라 한다)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교수 ○○○ (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

상기 연구과제에 대하여 "甲"과 "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및 범위)

- ① 본 계약서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甲"과 "乙"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 ② 본 계약의 범위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와 같고, 연구책임자가 연구완료 후 "甲"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본 계약에서 "성과물"이라 함은 본 계약상의 연구 수행 중에 또는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한 연구 기자재·연구시설, 부속품, 시작품 등의 유형적 결과물 및 기술, 각종 정보, 발견, 발명, 아이디어, 노하우, 샘플, 디자인, 자료, 프로젝트, 기록, 복사물 등의 무형적 결과물을 포함한다.
- ② 본 계약에서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본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창출된 "성과물" 중 아이디어, 발명, 특허, 실용신안, 고안, 의장, 저작물, MASK WORK, LAYOUT, 노하우, 컴퓨터 SW 등과 같이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지식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 ③ 본 계약에서 "공동지식재산권"이란 "甲"과 "乙"의 공동명의로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하여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말하며, 상기 출원 및 등록 지식재산권으로부터 파생된 변경출원, 분할출원, 계속출원, 재심사(Re-examination), 재발행

(Reissue)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제3조 (연구의 수행기관 및 책임자 등)

- ① 본 연구의 수행기관은 "乙" 및 "乙"이 설치, 운영하는 OOO(기관명)으로 하며, 연구책임자는 OOO 교수로 한다. 단, "乙"은 연구에 필요한 장소 협력을 "甲"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甲"은 "乙"의 장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乙"은 연구를 위한 인력을 "별첨 연구계획서"에 준하여 구성하고, "甲"과 협의 후 인력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③ 본 연구 수행에 관련된 연구 인력의 모든 관리통제 및 연구 인력과의 분쟁은 "乙"의 책임 하에 "乙"이 해결한다.

제4조 (연구기간)

본 연구기간은 2000년 0월 0일부터 2000년 0월 0일까지로 한다. 단, 본 기간은 "甲"과 "乙"의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 ① 본 계약에 의하여 "甲"이 "乙"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총액은 金00천만원정(W000,000,000)이며, 본 계약 체결 시 金00천만원정(W00,000,000)을 "乙"에게 현금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지급은, 해당 시점 이후 "甲"이 "乙"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乙"이 정하는 은행 계좌에 현금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제4조에 따라 연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연구비용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하여 제1항의 연구비와 별도로 "甲"이 "乙"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④ "甲"의 요청 시 "乙"은 연구비 사용 내역을 별도의 서식에 의거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성과 Incentive)

- ① "乙"이 연구 개발의 완료로 "甲"에게 제출한 "성과물"이 별첨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만족할 경우, "甲"은 제5조 "연구비"와는 별도로 연구 성과에 따른 Incentive 金000만원정(W00,000,000)을 "乙"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기여에 대한 평가 및 지급률은 "甲"과 "乙"이 협의하여 정한 기준으로 결정하며, 지급 방법은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 (연구보고서 제출 및 발표)

"乙"은 "甲"에게 연구기간 종료일 후 1개월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본 연구내용의 비밀유지를 위해 "甲"과 연구책임자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 ① "甲"과 "乙"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정 중에 "甲"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甲"과 협의할 수 있으며, "甲"은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연구책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의 의무)

- ① "甲", "乙" 및 연구책임자는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연구책임자는 "甲"과 사전에 비공개에 동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당해 연구결과를 학술적인 용도로 발표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결과 등의 귀속)

- ① <유형적 재산의 귀속>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성과물 중 시작품은 "甲"의 소유로 하고,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은 "乙"의 소유로 한다.
- ② <무형적 재산의 귀속>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성과물 중 발명, 고안, 의장, 컴퓨터프로그램, 배치설계, 저작물 등 무형적 성과물 (이하 "발명 등"이라고 한다)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甲"과 "乙"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단, 발명 등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활용 등은 각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출원/등록비용> 본 계약의 발명 등에 대한 "공동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특허출원, 특허권 설정등록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甲"의 부담으로 한다. "乙"은 "공동지식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해 출원 및 등록과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제출 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협력한다.
 2. <특허실시에 대한 보상> "甲"이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공동지식재산권"을 실시하는 경우에 "甲"은 "乙"에게 실시료를 지급한다. "甲"이 실시를 위해 "乙"의 지분을 매입할 경우 매입금액은 제5조의 연구비 총액의 100~500%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이전 방법 및 대가는 당사자의 별도 합의로 정한다. 또한 "공동지식재산권"이 "甲"이 정하는 표준화 단체의 표준지식재산으로 채택되는 경우 지분매입금액의 1~3배의 금액을 "乙"에게 추가로 지급한다.
 3. <지분처분> "乙"이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공동지식재산권"에 대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甲"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하며, 지분매각 대가는 제5조의 연구비 총액의 100~500%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이전 방법 및 대가는 당사자의 별도 합의로 정한다. "甲"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甲"은 "乙"의 지분매각에 동의해야 하며, "乙"은 매각시의 세금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甲"에게 지분에 따라 배분한다.

- 4. <제3자에게 실시권 허여 시의 수익배분> 본 계약의 당사자가 "공동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 실시권 설정시의 세금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상대방에게 지분에 따라 배분한다.
- 5. <CROSS-LICENSE 또는 PACKAGE-LICENSE의 경우> 본 계약의 당사자가 "공동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와 CROSS-LICENSING 또는 PACKAGE-LICENSING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동지식재산권"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중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상대방에게 지분에 따라 배분한다.
- 6. <관련 특허권 실시> "乙"이 본 연구수행 이전에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기술(이하-"선행기술"이라고 한다)이 본 연구결과에 사용되어 "甲"이 본 연구결과를 실시 또는 사용함에 있어 "선행기술"을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하여야 할 경우, "선행기술"에 대한 실시권 허여 및 실시료에 대하여 별도 협상하여야 한다.
- 7. "甲"이 본 계약에서 발생된 "공동지식재산권"을 실시함에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의 침해주장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乙"은 최선을 다해 "甲"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연구성과의 발표> "乙"은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성과물을 사용 또는 대내외 세미나 또는 간행물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표할 수 있으며, "甲"에게 (15)일 전에 발표의 목적, 대상 및 장소 등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며, 발표 시 Acknowledgement에 "甲"을 표시할 수 있다.
- ④ <신의성실 규정> 제3자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하여 "乙"은 "甲"이 요구하는 자료를 "甲"에게 성실하게 제공하며,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명칭 사용)

"甲"은 사전 승인 없이 "乙"이 제출한 문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증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乙"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계약상의 지위 양도의 제한)

"甲"과 "乙"은 상호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부담시킬 수 없다.

제13조 (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 ① "甲"과 "乙"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甲"은 연구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연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담보책임, 소송, 고소로부터 "乙"과 연구 책임자를 방어하고 손해가 없도록 보호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 ① "甲"은 다음 각 호의 경우 (30)일간의 기한을 두고 "乙"에게 시정을 요구한 후 "乙"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乙"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여 "乙"의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4)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 2. "乙"이 지정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물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3. "乙"이 "甲"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 및 결과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② "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 (30)일간의 기한을 두고 "甲"에게 시정을 요구한 후 "甲"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甲"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여 "甲"이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4)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 2. "甲"의 주요 재산이 압류, 가압류, 파산, 강제화의, 회사정리절차개시, 폐업, 휴업 등 중요한 변동이 있어 본 계약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 연구비 지급을 위반하여 "乙"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서도 (4)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된 시점까지 발생한 연구결과 성과물 등의 귀속은 제10조에 의하며, "乙"은 그때까지 소요된 연구비용을 정산하여 (4)주 이내에 "甲"에게 제출하고, "甲"은 이를 확인 후 정산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甲"과 "乙"은 제8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면할 수 없다.
- ⑤ 기타의 경우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일반적인 민법원칙에 의한다.

제15조 (기술지원 및 책임)

- ① 계약 완료 후 "乙"은 "甲"에게 기술 지원(자문)을 할 수 있다.
- ② "甲"의 기술요원이 기술 전수를 목적으로 제3조의 연구 장소에 파견되는 경우, "乙"은 연구시설, 사무실 집기, 비품 등의 연구환경을 제공하는데 최대한 협조한다.
- ③ 제2항을 수행하는데 있어 "乙"의 기술요원의 파견에 의한 환경 제공 등의 비용

은 양방의 협의에 의해 "甲"이 지불한다.

제16조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甲"과 "乙"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화재, 홍수, 지진, 폭풍, 정부법령, 전쟁, 폭동, 반란, 재해, 산업혼란, 노동쟁의 등에 의한 본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행한 경우 그 즉시 당사자는 상세한 사항과 진전 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석)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시 "甲"과 "乙"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 (계약의 변경)

"甲"과 "乙"은 상호 서면 합의에 의거 본 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이행 또는 쌍방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쌍방은 이를 원만히 상호협의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쌍방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20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甲"과 "乙"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 날인한 후 "甲", "乙" 및 연구책임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 부: 연구계획서 1부

2000년 0월 0일

"甲"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주소:	"乙"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인)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연구책임자 ○○대학 ○○학과 ○교수 ○○○ (인)
---	--

발명신고서(권리승계합의서) 및 변리사지정신고서

1. 발명신고서/ 권리승계합의서

발명의 명칭 Title of Invention	(국문) 제출하고자 하는 발명의 명칭을 기재 (영문)		
발명의 내용	별지서식에 따른 발명제안서 첨부		
출원/등록번호	상기 발명이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된 경우에 한해 기재		
교내지원기관	협약서상 센터가 발명자 지분을 가지는 경우에만 기재(기관명, 센터장 성명, 소속 기재)		
연구비관리기관			
공동출원여부	서울대 단독출원 <input type="checkbox"/> 공동출원 <input type="checkbox"/>		
서울대단독출원	비용부담	산학협력단 비용지원 <input type="checkbox"/>	연구비로 전액부담 <input type="checkbox"/> 연구비로 일부부담 <input type="checkbox"/>
	일부부담 시 부담예상금액		
공동출원	비용부담	타기관 단독부담 <input type="checkbox"/> 공동부담 <input type="checkbox"/>	
	공동출원인명	공동출원 지분율도 함께 기재	
번호	발명자 성명	소속학과 및 직위	연락처
발명자 (서울대) Inventor (Assignor)	1	(한글) 김 출 원 (인) (학과) 전기컴퓨터공학부	(Tel) 000-0000-0000 지분율(%) 20
		(영문) Kim Chul Won (서명) (직위) 조교수	(E-mail)
	주민번호	주소	
	2	(한글) (인) (학과)	(Tel) 지분율(%)
		(영문) (서명) (직위)	(E-mail)
	주민번호	주소	
3	(한글) (인) (학과)	(Tel) 지분율(%)	
	(영문) (서명) (직위)	(E-mail)	
주민번호	주소		
발명자 (타기관) Inventor (Assignor)	1	(한글) (인) 타기관명	(Tel) 지분율(%)
		(영문) (서명)	(E-mail)
	주민번호	주소	
2	(한글) (인) 타기관명	(Tel) 지분율(%)	
	(영문) (서명)	(E-mail)	
주민번호	주소		
연구과제유무	없음 <input type="checkbox"/> 정부과제 <input type="checkbox"/> 민간(기업)과제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정보	정부부처(관리기관)/기업명	주관기관명	과제고유번호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서울대학교	
	연구개발 사업명	연구개발 과제명	기여율(%)
	기초연구사업		100
	연구기간	해당 연구 연차	해당 연차의 연구비금액(천원)

	2009.11~2011.12.31	2년차	800,000
발명공개여부	미공개 <input type="checkbox"/> 이미 공개 <input type="checkbox"/> 공개 예정 <input type="checkbox"/>		
	공개일자	년 월 일 기재(2011년 1월 1일)	
	공개방법	논문발표, 학술지 게재, 연구보고서, 포스터, 구두발표 등 기재	
	공개정보	학술지명, 발표장소 등 정보기재	
	공개내용	발표내용 사본 첨부	
공개예정	공개가 예정인 경우, 예정일자 및 공개방법 기재		
변리사 지정	산학협력단 지정 위임 <input type="checkbox"/> 대리인 개별 지정 <input type="checkbox"/>		
	"대리인 개별 지정" 체크시 하단의 "2. 변리사지정신고서" 작성		
2010년 1월 1일			
상기의 발명을 서울대학교지식재산권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특허명세서의 발명자와 발명신고서의 발명자가 동일함을 확인하며, 발명자는 상기 발명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서울대학교지식재산권규정에 따라 양수인(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에게 양도하고, 동 규정에 따른 실시료 지급에 동의합니다.			
대표 신고자 및 확인자 (교수) 김 출 원 (인) 또는 (서명)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중			

2. 변리사지정신고서(개별 지정 희망 시 작성)

지정 변리사 정보	
변리사 사무소명	
사무소 주소	
대표변리사 성명	
대표 연락처	주소
	E-mail
	전화/FAX
담당변리사	성명, 연락처(유선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기재
상기 발명의 특허출원 등을 위한 대리인으로서 위 변리사를 선임할 것을 요청하며, 특허출원 등에 대한 비용은 산학협력단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표발명자가 부담할 것임을 서약함.	
2011년 1월 1일 대표발명자 소속: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과) 대표발명자 성명: 김 출 원 (인) 또는 (서명)	

발명제안서 및 선행기술조사서

1. 발명제안서

I. 서지사항		
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발명신고서류 기재요령) 참조 6T분류 IT□ BT□ NT□ ET□ ST□ CT□	
발명의 명칭	(국문)	
	(영문)	
대표발명자 (책임교수)	성명	
	소속/직책	
실무발명자 (담당자)	연락처	
	유선전화, 이메일 반드시 기재	
선출원정보	성명	
	소속/직책	
출원희망국	1. 기존출원의 개량발명을 위한 후속출원인가?	YES □ NO □
	2. 기존출원의 해외출원인가?	YES □ NO □
	3. 기존출원의 중간/등록비용 등의 비용신청인가?	YES □ NO □
	출원번호	출원일자
출원대리인	사무소명, 담당변리사명, 연락처(전화, 이메일) 기재	
출원희망국	한국□ 해외□ (PCT□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기타□ ())	
II. 발명의 사업성 의견		
발명의 속성	a.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기본발명이다. ()	
	b. 기존기술을 대체하는 대안을 제시한 발명이다. ()	
발명의 완성도	c. 기존기술의 개량한 발명이다. ()	
	근거	발명의 기술적 중요도를 중심으로 자세히 기재할 것
기술이전 가능기업	산업기술분야	제약산업, 통신산업, 반도체산업과 같은 산업기술분야
	해당 기업명	로슈, 쉘컴, 삼성전자와 같은 구체적인 기업명을 기재
시장규모	국내 시장규모	
	해외 시장규모	
상용화 예상기간	판단근거	이데일리 2010. 7.7일자 뉴스기사, 시장보고서 등과 같이 객관화된 시장동향 정보 제시
	1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이내 □ 10년 이내 □ 10년 이상 □	
사업화 경쟁력	근거	
	기업투자유치경쟁력(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술의 특징점) 및 시장진입 장려요인(저탄소 녹색성장기술 등과 같이 시장 진입 장려요인)을 상세히 기재	
현재접근기업/ 사업화전략	a. 현재 기술이전에 적극적인 기업이 있다. (기업명:)	
	b. 접촉 가능한 기업이 있다. (기업명:)	
	c. 출원 후 사업화 전략이 있다. ()	

전문가 정보	해당 기술의 기술성 또는 시장성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 경우 성명, 소속, 연락처 기입
기술이전시 필요한 추가실험	양산화 실험 □ scale-up 실험 □ 임상실험 □ 기타 □ (상세기재)
해외출원 지원근거	출원 희망국에 "해외"를 체크하고 "PCT" 또는 특정 국가를 선택한 경우, 해외출원 비용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기재
발명자 기술이전선례	대표발명자 등의 기술이 기술이전된 선례가 있는 경우, 이를 기재
III. 발명의 상세한 설명	
<작성기준>	
o 원칙적으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종사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함.	
o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종사자의 지식 범위: 해당 전공의 대학교 4학년~석사 2년차 정도	
1. 발명의 요약	o 발명의 내용을 간략히 확인할 수 있도록 발명의 Concept을 간략히 기재함.
2. 기술분야	o 본 발명이 무엇에 관한 것이며, 어느 기술분야에 적용되는지를 기재
3. 배경기술(종래기술) 해결할 과제/목적	o 본 발명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내용을 간략히 기재 o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발명인 경우, 본 발명과 관련되는 종래기술의 개요, 구성, 효과를 기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기재함. o 관련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본 발명 자체로서 독자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 해당 목적을 기재함.
4. 본 발명의 구성 (과제의 해결 수단)	o 본 발명의 목적 또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필수적인) 기술적 수단에 대한 개념을 기재함. o 개개의 핵심적인 기술적 수단(구성)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이들이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등에 대해 기재함. o 본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수단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 도면 첨부 필수 .
5. 발명의 효과	o 본 발명과 종래의 기술과의 구성 및 동작의 차이에서 오는 효과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o 발명의 기술적 구성으로부터 파생되는 발명효과를 기재하는 것으로 어떠한 구성에 의해서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표시.

6. 구체적인 실시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발명을 아래의 내용으로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기재함(약어의 경우, 최초 1회는 full name 기재). ○ 장치, 시스템에 관한 발명인 경우, 장치, 시스템에 대한 도면첨부 필수. ○ 방법, 알고리즘 등의 발명인 경우, 관련 플로우차트 도면첨부 필수 ○ 구조도(시스템 구조), 회로도, 공정도(플로우 차트 등) 등 첨부도면과 관련하여 발명의 각 구성요소 별로 구조, 기능 그리고 전체적인 결합관계와 동작을 순서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함. 실험데이터가 있으면 함께 기재함.
7. 산업상 이용분야/ 응용가능분야	○ 타 기술분야에도 활용 가능하다면 그 기술분야도 기재

2. 선행기술조사서

I. 선행특허 조사				
검색사이트				
검색키워드				
1	공개번호	공개일	국가	
	선행특허 요약	대표도면		
	본발명과의 유사점			
	본발명과의 차이점			
2	공개번호	공개일	국가	
	선행특허 요약	대표도면		
	본발명과의 유사점			
	본발명과의 차이점			
II. 선행논문 조사				
1	논문정보			
	선행논문 요약	대표도면		
	선행논문과의 유사점			
	선행논문과의 차이점			
2	논문정보			
	선행논문 요약	대표도면		
	선행논문과의 유사점			
	선행논문과의 차이점			
III. 종합검토 의견				

[별지 제3호] 대학기술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A. 수학	A1. 대수학	
	A2. 해석학	
	A3. 위상수학	
	A4. 기하학	
	A5. 확률·통계	
	A6. 응용수학	
	A7. 전산수학	
	A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학	
	B. 물리학	B1. 입자·장물리
		B2. 열·통계물리
B3. 원자핵물리		
B4. 유체·플라즈마		
B5. 광학		
B6. 응집물질물리		
B7. 원자·분자물리		
B8. 천체물리·우주론		
B9. 복합물리		
B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리학		
C. 화학	C1. 물리화학	
	C2. 유기화학	
	C3. 무기화학	
	C4. 분석화학	
	C5. 고분자화학	
	C6. 생화학	
	C7. 광화학	
	C8. 전기화학	
	C9. 융합화학	
	C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학	
D. 생명과학	D1. 생물학	
	D2. 유전공학	
	D3. 단백질·탄수화물·지(방)질공학	
	D4. 세포·조직공학	
	D5. 생물공정·대사공학	
	D6. 생물정보학	
	D7. 나노 바이오	
	D8. 생물자원 보존·생산·이용 기술	
	D9. 생물안전성	
	D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명과학	
E. 지구과학	E1. 지질과학	
	E2. 지구물리학	
	E3. 지구화학	
	E4. 대기과학	
	E5. 기후학	
	E6. 해양과학	
	E7. 극지과학	
	E8. 지구시스템과학	
	E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구과학	
	F. 기계	F1. 자동화 기술
F2. 육상수송기계		

G. 재료	F3. 에너지·환경·	
	F4. 산업·일반기계	
	F5. 미소·극미소 기전시스템 장비	
	F6. 극한·첨단 복합기계 기술	
	F7. 복합설계·생산기반 기술	
	F8. 측정표준·시험평가 기술	
	F9. 산업공학 기술	
	F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H. 화학공정	G1. 금속재료
		G2. 세라믹재료
G3. 고분자재료		
G4. 복합재료		
G5. 전자재료		
G6. 나노재료		
G5. 분석·물성평가 기술		
G6. 재료 공정기술		
G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재료		
I. 전기 전자		H1. 촉매·반응 기술
	H2. 분리·정제 기술	
	H3. 공정 시스템 기술	
	H4. 분자·나노 화학공정 기술	
	H5. 화학물질·제품제조 기술	
	H6. 고분자 공정 기술	
	H7. 생물화학 공정 기술	
	H8. 섬유·의류 제조 기술	
	H9. 화학공정 안전·보건·환경 기술	
	H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학공정	
J. 정보	I1. 산업용 전기전자	
	I2. 전자제품	
	I3. 전자요소 기술	
	I4. 반도체	
	I5. 전기시스템	
	I6. 전기 응용 기술	
	I7. 전력전자 기술	
	I8. 미소·극미소 전자시스템	
	I9. 융합전기전자기술 시스템	
	I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융합전기전자기술	
K. 통신	J1. 컴퓨터	
	J2. 시스템 소프트웨어	
	J3. 소프트웨어	
	J4. 정보보호·보안	
	J5. 콘텐츠 제작·유통 기술	
	J6. 컴퓨터 그래픽스·게임·애니메이션 기술	
	J7. 공간 정보 기술	
	J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보	
	K. 통신	K1. 전송 기술
		K2. 교환 기술
K3. 통신망		

L. 농림·수산	K4. 전파 기술	
	K5. 무선·이동통신	
	K6. 정보통신단말	
	K7. 방송·위성	
	K8. 통신응용서비스	
	K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통신	
	M. 보건·의료	L1. 농·림·예작물
		L2. 농생물·화학
		L3. 축산
		L4. 수의학·수의과학
L5. 농공 기술		
L6. 산림관리·조경		
L7. 수산 양식·생산 기술		
L8. 수산자원 관리·공학 기술		
L9. 식품가공 기술		
L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림·수산		
N. 환경	M1. 의과학	
	M2. 약과학·향장과학	
	M3. 의료공학	
	M4. 식품안전성·영양	
	M5. 의료정보학	
	M6. 한의학	
	M7. 간호과학	
	M8. 치의학	
	M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보건·의료	
	O. 에너지·자원	N1. 사전오염예방·청정요소 기술
N2. 환경오염 제어·관리 기술		
N3. 환경소재·부품·설비		
N4. 환경보전·복원 기술		
N5. 환경보건 기술		
N6. 환경정보화 기술		
N7. 환경예측·감시·평가 기술		
N8. 환경·자연재해 예측·저감 기술		
N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		
P. 원자력		O1. 에너지 생산 시스템
	O2. 에너지 변환·저장	
	O3. 에너지 효율 기술	
	O4. 에너지 청정 기술	
	O5. 신·재생에너지	
	O6. 자원탐사 기술	
	O7. 자원개발 기술	
	O8. 자원활용 기술	
	O9. 자원기반 기술	
	O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에너지·자원	
P. 원자력	P1. 원자로 노심 기술	
	P2. 원자로 계통 기술	
	P3. 원자력 계측·제어 기술	
	P4. 원자력 안전 기술	
	P5. 핵연료·원자력소재	
P6. 핵연료주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Q. 건설·교통	P7. 방사선 기술
	P8. 원자력 기반·첨단 기술
	P9. 원자력시설 건설·운영 기술
	P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
	Q1. 건설 계획·설계 기술
	Q2. 시공·재료·건설 관리 기술
	Q3. 유지관리 기술
	Q4. 구조물·지반공학 기술
	Q5. 수공시스템 기술
	Q6. 건설환경·설비 기술
Q7. 신공간 기술	
R. 우주·항공, 천문, 해양	Q8. 교통시설·수단·환경 기술
	Q9. 교통운영·관리·안전 기술
	Q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건설·교통
	R1. 우주 발사체
	R2. 인공위성
	R3. 항공기
	R4. 천문우주과학
	R5. 천문우주환경 관측 기술
	R6. 해양환경
	R7. 해양자원
R8. 조선	
S. 기술혁신·과학기술정책	R9. 해양공학
	R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우주항공·천문·해양
	S1. 과학기술과 사회·문화
	S2.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S3. 과학기술과 혁신
	S4. 과학기술과 정책
S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술혁신·과학기술정책	

1. 기술의 소유

	Description	Notes	Ans
Dependency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외 타기관 소유의 특허가 필요한가?	Yes	
		No	
Influence	발명자 중 서울대학교 외 타기관 소속자가 있는가?	Yes	
		No	
Funding	기술개발을 위해 여러 기업의 연구비 또는 여러개 정부과제를 지원 받았는가?	Yes	
		No	
History	연구계약서가 남아 있는가?	Yes	
		No	
		Not Application	
Maintenance	발명자의 수	Only 1	
		2 or 3	
		3 to 5	
		More than 5	

2. 기술개발 진행정도

Stage of Development	Description	Notes	Ans
Understanding	특허 내용의 난이도는?	Very Easy	
		Easy	
		Average	
		Hard	
		Very Hard	
Reduction	해당기술의 사업화를 고려한 시뮬레이션 또는 실험을 해 보았는지?	Yes	
		No	
Prototypes	기술에 대한 demonstration을 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은?	No Problems	
		A Little Problem	
		A Problems	
		Several Problems	
		Big Problems	
		Not Applicable	
Production	실험실 규모의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제품생산과 연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 규모를 늘려야 하는가? (Amount of scale up needed)	Very Small	
		Small	
		Average	
		Large	
		Very Large	
		Not Applicable	

Financial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개발과정에 들어갈 비용은?	Very Small	
		Small	
		Average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예를 들어 원료비가 비싸다 등)	Large	
		Very Large	
		Very Small	
Leadership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내부인력(교수 또는 학생)의 태도는?	Small	
		Average	
		Large	
		Very Large	
		Enthusiastic supportive	
	Ambivalent		
	Negative		

3. 기술의 보호 강도

Protectability	Description	Notes	Ans
Challenge	국내 및 해외에서 특허출원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분야인가?	Yes	
		No	
Strength	회피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노력 정도는?	Very Easy	
		Easy	
		Average	
		Hard	
		Very Hard	
Enforcement	본 기술을 타인이 침해하였을 경우 침해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가?	Very Easy	
		Easy	
		Average	
		Hard	
		Very Hard	
Reach	해외에서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Very Easy	
		Easy	
		Average	
		Hard	
Timing	논문발표/학회발표를 하였는지? (또는 가까운 미래에 발표계획이 있는지?)	Very Hard	
		Yes	
		No	
Security	타인이 본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가? (Ability to exclude others from practicing)	Very Easy	
		Easy	
		Average	
		Hard	
	Very Hard		

4. 사업화 가능성

Commercialization	Description	Notes	Ans
Knowledge	시장에서 본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알기가?	Very Easy	
		Easy	
		Average	
		Hard	
		Very Hard	
Breadth	기술이 적용될 제품의 시장규모는? (Potential market size)	Excellent	
		Above Average	
		Average	
		Below Average	
		Poor	
Industry Contacts	본 기술을 사용한 시장(기업)과 쉽게 만날 수 있는가?	Excellent	
		Above Average	
		Average	
		Below Average	
		Poor	
Industry Feedback	기술을 살펴본 산업계의 반응은?	Enthusiastic	
		Supportive	
		Ambivalent	
		Negative	
Market Location	주로 국내에서 사용할 기술인가?	False	
		True	
Market Place Competition	시장에서 다른 기술과의 경쟁력은?	Excellent	
		Above Average	
		Average	
		Below Average	
		Poor	
Time to Market	본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출시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1 year	
		1 year	
		6 mo to 1 year	
		3 mo to 6 mo	
		less than 3 mo	
Regulations	본 기술과 관련된 법적 규제가?	Very Many	
		Many	
		Average	
		Few	
		Very Few	
Significance	기존기술 대비 개량 정도는? (Improvement to the state of the art)	Insignificant	
		Slight Improvement	
		Moderate Improvement	
		Significant Improvement	
		Revolutionary	
Licensing Barriers	(관련기업을 고려할 때) 대학의 기술을 라이선스 받는데 익숙한 기업들의 수는?	Very Many	
		Many	
		Average	
		Few	
		Very Few	
Timeliness	기술이 라이선스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현재로부터 얼마 후인가?	>1 year	
		1 year	
		6 mo to 1 year	
		3 mo to 6 mo	
		less than 3 mo	

평가 지표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배점(가중치)
기술성 Technology	경쟁력 Competitiveness (25점)	해외 기술 대비 첨단성	5 (0.8)
		해외 기술 대비 유익성	5 (1.0)
		제품화 양산설비의 규모	5 (0.8)
		제품화 개발과정 소요비용	5 (0.8)
		적용 제품의 생산원가	5 (0.8)
		해외시장 내 기술수명	5 (0.8)
시장성 Marketability	시장진입 가능성 Market Friendliness (24점)	기술이전 가능 기업의 수	5 (0.8)
		해외진출 가능한 국내기업의 수	5 (1.0)
		잠재 수요자와의 접촉 용이성	5 (0.8)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점유율	5 (0.8)
		해외시장진입 확신도	5 (0.6)
		기술이전 예상 시기	5 (0.8)
	시장 규모 및 성장성 Market Potential (21점)	적용 예상 세계시장의 규모	5 (1.0)
		해외시장 성장세	5 (1.0)
사업성 Commerciality	사업화가능성 Commercial Potential (30점)	해외시장의 국내 점유율	5 (0.6)
		경쟁(대체)제품의 시장지배력	5 (0.8)
		해외 틈새시장 존재성	5 (0.8)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지	5 (0.6)
		기술이전대상 존재 명확도	5 (0.8)
		기술의 효익	5 (0.8)
		추가 투자의 규모 등	5 (0.8)
		신생기업 관련성	5 (0.8)
		제품경쟁력 제고 기여도	5 (0.8)
		보호가 필요한 국가의 범위	5 (0.6)
관련 표준 부합여부	5 (0.8)		